등록일시:2026.10.29 13:42, 출력자:박대면, 다운로드일시:2026.11.03 14:18

대 구 회 생 법 원
제 2 파 산 부
이의통지서

사 건	2026회합145 회생
채 무 자	학교법인 원석학원
	경주시 태종로 516 (충효동)
법률상관리인	박대면
채권신고인	

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기간(2026. 10. 27.까지) 내에 귀하가 신고한 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으므로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9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. 위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이 법원에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 확정 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(같은 법 제170조), 이미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의 수계절차(같은 법 제172조)를 밟지 않으면 이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등록일시:2026.10.29 13:42, 출력자:박대면, 다운로드일시:2026.11.03 14:18

2026. 10. 29.

재판장 판사 이 종 길 전자서명완료

※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려면 2026. 11. 27.까지 대구회생법원에 조사확정재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.